

목 차

1.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
2.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5
3.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년월일 : 1998. 5. 1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 안 이 유

국유재산법령 개정등의 사유로 공유재산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 지침(내무부)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등과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재산관리와 행정의 통일성 유지

□ 주 요 골 자

- 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중 현행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나.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에 따라 공장용지등(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 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안 제22조제8호 신설)
- 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규정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안 제23조제2항)
- 라. 현행 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이 '81. 4. 30일 이전 건물은 "1000분의 25", '81. 4. 30일 이후 건물은 "1000분의 50"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료(대부료) 격차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됨으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사용료(대부료) 부담을 경감(안제23조제6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중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 ①(생략)</p> <p>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금액에 의한 금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제6조 ①(현행과 같음)</p> <p>1. ----- 시가표금액에 ----- ----- ----- ----- -----</p>
<p>제22조 1. ~ 7. (생략)</p> <p><u><신 설></u></p>	<p>제22조 1. ~ 7. (현행과 같음)</p> <p>8.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제23조 ①(생략)</p> <p>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분은 대부분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p>	<p>제23조 ①(현행과 같음)</p> <p>② ----- ----- -----</p>

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㉞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
는 특정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
이 없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
로 한다.

-- 토지시가표준액의 -----

㉞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
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 광업, 지식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속되는 재산
4. 정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98年度 公有財產 管理指針

內 務 部

○ 개정준칙 : 별첨(○○시·군·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준칙)

○○시·도(시·군·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준칙

○○시·도(시·군·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는 동조례 제22조제3항
제5호를 신설

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는 동조례 제39조제1호를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로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
----------	-----

제출년월일 : 1998년 6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1급 내지 6급에게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씨씨 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는 2000씨씨 이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제2항)

나.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같은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다. 장애인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은 4급)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씨씨 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이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라.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다음에 제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여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증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p><신설> <신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p> <p>①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p>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3.(생략)

<신설>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3.(중전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① -----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3.(현행과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관계법령 발취서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 등 허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계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 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 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 등에 의한 세 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결결과

□ 조례안 _____ 건

□ 내 역

순번	외안번호	제출부서	건 명	비 고
			[조례안]: 1건	
1	1998- 17	재 무 과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60	10%	10%
신	강	강
무시	강	강

사
1998년 2월 27일 제

우 200-700/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 (0361) 54-2011(교) 2311 / 담당 김태영

문서번호 세정 13430 ~ 126
 시행일자 1998. 2. 28. (년)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무(세정·재무)과장

선결	순수	지시	
접	일자	결	부순수
수	번호	재	가재지
처리과		공	4장
담당자		람	계장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통보

기획예산처
 재무정책처

1. 내무부 세제 13400~41('98.2.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시행바랍니다.

붙임 :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내무국장 전결



수신처 : 더(01~18)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

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 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 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 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 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 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 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 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 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 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 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 차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 자동차</p>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신 설>

<신 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3. (종전 제2항의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3. (생략)

<신 설>

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

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

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3. (현행과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5
----------	-----

제출연월일 : 1998. 5. 1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상위법인 초지법이 법률제5324호('97.4.10) 개정공포로 폐지
- 폐지조항 : 초지법 제4조(초지조성 심의위원회)
- 폐지되는조례 : 평창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제637호:80,6,17)
- 내 용 :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조성및 전용허가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 조치임.

2. 주요 골자

초지조성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기 위하여 산물관리계획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함(法 第 102條의 2).

나. 山林經營 및 林野買賣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林野를 去來할 때 市長·郡守로부터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林野買賣證明制度를 廢止함(現行 第110條 내지 第112條의 2 削除).

사. 林業技術開發成果의 早期産業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特許證 發給에도 技術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研究開發에 참여 한 公務員에 대하여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第 114條의 4).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중개정법률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7년 4월 1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정 시 채
 동료부장관

◎法律 第5,324號

草地法中改正法律

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未墾地”를 “未開墾地”로 한다.

第3條第1項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自然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綠地保全地域, 自然生態系保護地域 및 特定野生動物·植物保護地域

第3條第2項중 “農林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으로, “未墾地”를 “未開墾地”로, “관계行政機關과 協議한 후 당해 機關에 設置된 草地造成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를 “關係行政機關과 協議한 후”로 한다.

第4條를 削除한다.

第5條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草地造成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草地造成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草地造成許可 申請地가 2개이상의 市·郡·自治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申請 面積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할 때에는 草地造成期間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5條의 2第1項 및 第5項중 “許可廳”을 각각 “市長·郡守”으로 하고, 同條第6項을 削除한다.

第6條중 “許可廳”을 “市長·郡守”으로 한다.

第7條를 削除한다

第8條 題目중 “草地造成地區內”를 “草地造成地區안”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草地造成地區 및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圍地造成地區內에서는 許可廳의”를 “草地造成地區안에서는 市長·郡守의”로, “各號의”를 “各號의 1의”로 한다.

同項第2號(중건의 第1號)중 “第15條第1項”을 “第15條의2第3項”으로 하며, 同項에 第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第11條第1項 前段 또는 同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된 이 행한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는 이 法에 의한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진행중인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原狀回復에 대한 經過措置) 중건의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의 原狀回復에 관한 命諭은 이 法에 의한 市長·郡守가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賃借料동의 算定을 위한 土地價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賃借하거나 貸付받은 土地의 賃借料 또는 貸付料의 算定の 기준이 되는 土地價格은 중건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건의 規定에 의한다.

◇草地法 改正理由

草地造成審議委員會를 廢止하여 草地造成 및 轉用 許可시 許可節次를 간소화하는 등 農業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草地의 圍地造成地區指定制度를 廢止하는 등 現行 制度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草地造成 및 轉用 許可시 그 審議를 거치지도록 되어 있는 草地造成審議委員會를 廢止하고 農林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草地造成 및 轉用 許可權者를 市長·郡守로 一元化하여 行政節次를 간소화함(現行 第4條 削除,

法 第5條 및 第23條).

나. 圍地造成地區를 指定·告示하여 草地를 造成하도록 하는 制度는 현실적으로 그 實效성이 적으므로 이를 廢止함(現行 第7條 削除).

다. 草地造成許可로 발생한 權利·義務를 이전할 경우 許可證의 상인을 열도록 하고 있는 것을 申告만으로 可能하도록 함(法 第11條).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진흥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1997년 4월 1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 시 채